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8 - 47 - 428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9. 4.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의 판매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28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며,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의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사업개시일 :)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이용자 민원(개인정보 불법 보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2017.6.28.)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8.1.16.)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은 2017.8월부터 2017.10월까지 판매한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이름(1자리 마스킹), 이동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1,056건을 이메일(대표자)에 엑셀파일 형태로 보유한 사실이 있다.

[그림] 엑셀 파일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항목

10월 개통				
고객명	개통번호	생년월일	가입유형	판매처
이강*	010-9254	610322-2	번호이동	초음1동-온
이정*	010-1512	620721-1	번호이동	초음1동-온
황현*	010-7278	511213-1	번호이동	초음1동-온
박영*	010-6005	840314-1	번호이동	초음1동-온
백창*	010-3277	881007-1	번호이동	초음1동-온
장영*	010-8887	820323-2	번호이동	초음1동-온
차형*	010-9572	740202-1	번호이동	초음1동-온
김지*	010-3326	991217-2	번호이동	초음1동-온
조남*	010-8162	830514-1	번호이동	초음1동-온
안영*	010-1550	931126-1	번호이동	초음1동-온
이채*	010-5905	060706-4	번호이동	초음1동-온
미*	010-8665	821003-1	번호이동	초음1동-온
최호*	010-9159	871201-1	번호이동	초음1동-온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7. 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8. 3.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처리 위탁받은 통신서비스 판매 및 가입이 완료되어 수집·이용 목적이 완료된 이용자 개인정보 1,056건을 파기하지 않고 이메일에 엑셀파일로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미파기	§29①1호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벌 칙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해당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고 향후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9월 4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인)

(국회 참석 관계로 회의 불참)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